

#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2003~8 |
|----------|--------|

|      |         |
|------|---------|
| 제출일자 | 2003. 2 |
| 제안자  | 거창군수    |

## ■ 개정이유

- 부설주차장 설치가 곤란하여 주차장설치의무를 면제하고 당해 주차장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군수에게 납부함으로써 주차장 설치에 갈음토록 하여 건축주의 부담을 경감하고, 최근 다가구, 다세대 등 일명 원룸 건축물과 자가용 소유자의 증가로 주차난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주차난 완화를 도모하고,
-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등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정비함과 동시,
-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흡한 부분을 수정,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설치 관리하며,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을 명확히 함.

## ■ 주요골자

-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 무상사용주차장 등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관련)
-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정함(안 제15조의2 신설)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부여시 부설주차장설치비용 산정방법(안 제1안)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부설주차장설치비용 산정방법(안 제2항)
-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 하여야하는 시설물에는 장애인전용 주차장을 3%의 비율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19조)
- 제19조의 사용하는 용어 중 “지체부자유자”를 “장애인”으로 변경함.

## ■ 제정근거

-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1.
- 부설 주차장의 설치비용 선정기준등에 관한 조례 작성지침

【지교 58400-11326】

#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 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납부하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노외주차장 무상 사용권 : 법 제19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5. 무상사용 노외주차장 : 영 제1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제14조 중 “영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별표1과”를 “별표2호와”로 하여 별지와 같이한다.

제1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 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 ① 법 제19조 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 ② 법 제19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 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의 주차 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제19조 중 “의하여 설치하는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은”를 “의거 장애인전용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을 3퍼센트의 비율로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19조 제1항 제3호 중 “지체부자유자용”를 “장애인전용”로 한다.

제19조 제2항 중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의 바닥 및 지붕은”를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바닥은”로 한다.

제19조 제3항 중 “지체부자유자”를 “장애인”로, “설치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9조 제2항 제2호, 동조 제3항 제1호, 동조 제3항 제2호, 동조 제4항 중 “지체부자유자”를 “장애인”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조(적용범위 및 정의)</p> <p>① (생략)</p> <p>② 1~ 3(생략)</p> <p>&lt;신설&gt;</p><br><p>&lt;신설&gt;</p><br><p>&lt;신설&gt;</p><br><p>제14조(주차장의 설치기준)</p> <p>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은 영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별표1과 같다.</p> <p>&lt;신설&gt;</p> | <p>제2조(적용범위 및 정의)</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1~3(현행과 같음)</p> <p>4.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같음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납부하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p> <p>5. 노외주차장 무상 사용권 : 법 제19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p> <p>6. 무상사용 노외주차장 : 영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p><br><p>제14조(주차장의 설치기준)</p> <p>-----</p> <p>-----</p> <p>-----별표2와 같다.</p> <p><b>제15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b></p> <p>① 법 제19조 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p> <p>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p> <p>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p> |

| 현행  | 개정안  |
|---|--|
| <p>제19조(지체부자유자 전용 주차장 설치기준)①영 제6조 제1항의 별표1 비고 제10호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지체부자유자 전용 주차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p> | <p>3. 토지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p> <p>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p> <p>② 법 제19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p> <p>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 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p> <p>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p> <p>3. 토지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p> <p>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주차 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p> <p>제19조(장애인 전용 주차장 설치기준) ① - - - - -의거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을 3퍼센트의 비율로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 - - - -</p> |

| 현행  | 개정안  |
|---|--|
| <p>1.~2.(생략)</p> <p>3. <u>지체부자유자용</u>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p> <p>② <u>지체부자유자 전용 주차장의 바닥 및 지붕은</u> 다음 각호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p> <p>1.(생략)</p> <p>2. 주차장 바닥에는 <u>지체부자유자 전용</u> 표시를 하여야 한다.</p> <p>③ <u>지체부자유자 전용</u> 주차장에는 다음 각호의 표시를 <u>설치하여야 한다.</u></p> <p>1. 주차장 입구에는 <u>지체부자유자 전용</u> 주차장 표시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p> <p>2. 주차장 입구에는 <u>지체부자유자 전용</u> 주차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p> <p>④ <u>지체부자유자 전용</u> 표지는 별지6호 서식의 기준에 의한다</p> | <p>1.~2.(현행과 같음)</p> <p>3. <u>장애인 전용</u> - - - - -</p> <p>② <u>장애인 전용 주차장의 바닥은</u> - - - - -</p> <p>1.(현행과 같음)</p> <p>2. - - - - - <u>장애인</u> - - - - -</p> <p>③ <u>장애인</u> - - - - - <u>하여야 한다.</u></p> <p>1. - - - - - <u>장애인</u> - - - - -</p> <p>2. - - - - - <u>장애인</u> - - - - -</p> <p>④ <u>장애인</u> - - - - -</p> |

<별표 2>

##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 시 설 물   | 설 치 기 준   |
|---|---|
|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80㎡당 1대  |
|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 공공용시설 중 방송국 | 1. 주거 및 상업지역 :<br>시설면적 120㎡당 1대<br>2. 기타지역 :<br>시설면적 150㎡당 1대                                     |
|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1. 주거 및 상업지역 :<br>시설면적 150㎡당 1대<br>2. 기타지역 :<br>시설면적 200㎡당 1대                                     |
| 4.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 시설면적 130㎡초과 200㎡이하의 경우에는 1대, 시설면적 200㎡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200㎡를 초과하는 130㎡당 1대를 더한 대수<br>(4가구 이상시 세대당 1대) |
| 5. 공동주택(다세대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 시설면적 100㎡당 1대,<br>세대당 1대 중 많은 것   |
|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의 경우에는 1홀당 10대,<br>골프연습장의 경우에는 1타석당 1대,<br>옥외수영장의 경우에는 정원 15인당 1대, 관람장의 경우에는 정원 100인당 1대       |
| 7. 기타 건축물   | 시설면적 300㎡당 1대   |